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　작　사 : THERMAL LUBE INC.
255 LABROSSE AVE
POINTE-CLAIRE, QUEBEC, CANADA H9R-1A3
TEL : (514)694-5823　FAX : (514)694-8628
나. 제　품　명 : XL-8875 고속베아링용 합성그리이스
다. 일반적 특성 : 합성윤활그리이스
라. 유해성 분류 : 자극성 물질
마. 공급자 정보 : 라우화학 주식회사 / www.rauh.kr
라. 정보 제공자 : (주)지에이치아이/ TEL : 1833-5995

2. 위험・유해성

가. 위험・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흡입: 분진/미스트):구분4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결고표시 항목
그림문자　자극성 물질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예방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피부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전 세탁하시오
저장: 해당없음

폐기: 해당없음

수소처리된 파라핀 정제유 : 보건 1 화재 1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 명	CAS 번호	%
Group2+ 미네랄 오일	8012-95-1	30~50 %
Synthetic Hydrocarbons	68649-12-7	30~50 %
Inorganic Clay	68953-58-2	7~13 %
Molybdenum disulphide	1317-33-5	1~5 %

4. 응급 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흐르는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세척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을 제거한 후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세척한다.
- 필요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다. 흡입했을 때

- 피해자를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 호흡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증상 발생시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라. 먹었을 때

- 즉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 내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
-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억지로 토하게 하지말것.

마. 의사의 주의사항

-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므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발화점 : 280℃

나. 자연 발화점 : 자료 없음.

다. 최저 인화 한계치 : 자료 없음.

라. 최고 인화 한계치 : 자료 없음.

마. 소방법에 의한 분류와 규제 내용 : 위험물 4류, 제4석유류

바. 소 화 제 : 포말, 건식 화학분말, 이산화탄소, 포말소화기 등.

사. 소화방법 및 장비

- 초기 화재시 포말, 분말, 이산화탄소, 등이 유효하며 기타의 경우 포에 의해 질식소화 한다.
- 소규모 화재시 화재원 주변은 물 분무도 유효하다.
- 대형 화재 시는 규정 포말을 활용하여 소화한다.
- 지역 비상계획에 따라 대피나 격리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
- 물 스프레이를 사용해 화재에 노출된 용기를 식힐 것.
- 화학물질이 관련된 대형화재 진화시 개인호흡기와 보호 복을 반드시 착용할 것.

아.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탄소 산화물과 불완전 연소된 탄소화합물.
- 질소 산화물, 등.

자.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설정되지 않음.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눈과 피부에 제품이 접촉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보호안경, 안전장갑, 안전화와 안전 복을 착용한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모래, 흙 또는 흡착포로 제거하고 유출 확산을 저지한다.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흡착제, 흡수제, 톱밥, 모래 등을 이용해서 번지는 것을 막고 제거한다.
- 다량의 경우 용기, 펌프 등으로 회수한다.
- 자연 발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질을 충분히 닦아 내거나 완전히 흡수하여 폐기할 것.
- 물질의 누출이나 폐기시 또는 누출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할 것. 어떤 법규가 해당되는지 결정해야만 함.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 취급 요령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취급할 것.

-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먹지 말 것, 산업위생을 적절히 관리할 것.

-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 화기에 주의하고 화염 불꽃, 고온물체와의 접촉을 피할 것.
-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식음 및 흡연할 것.
-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나. 보관 방법

- 가열금지, 화기주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 적절한 주의를 하고 산화성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
-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밀봉할 것.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가. 공학적 관리방법

- 연속 작업시 증기를 흡입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 국소 환기 : 연속 작업 시, 또는 노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할 것.
- 일반 환기 : 추천함.

나. 호흡기 보호

- 일반 사용시 요구되지 않으나 연속 작업시나 노출 허용치를 초과 하는경우 호흡 보호구를 착용할 것.

다. 눈 보 호 : 적절한 보호구 및 보호안경을 착용할것.

라. 손 보 호 : 반복 접촉시 보호장갑(내 유성, 내 화학성)을 착용할 것.

마. 신체 보호 : 피부 접촉을 최소 화 시키고 안전 복을 착용할 것.

바. 위생상 주의사항 :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사. 노출기준 (TWA) :자료없음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 관 :	금빛노랑.	**나. 냄 새 :**	약간의 냄새
다. 수소이온지수 (pH) :	자료 없음	**라. 용 해 도 :**	자료 없음
마. 끓는점/끓는점 범위:	자료 없음	**바. 녹는점/녹는점 범위 :**	자료 없음
사. 폭 발 성 :	없음	**아. 산 화 성 :**	없음
자. 증기압 (㎜Hg) :	자료없음	**차. 비 중 :**	0.855
카. 분배계수 :	자료 없음	**타. 증기밀도 :**	자료 없음
파. 주 도 :	2	**하. 분 자 량 :**	자료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안정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화기, 직사광선 및 강산화제.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질소 산화물, 탄소 산화물, 등.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급성 경구 독성 : 자료 없음

나. 급성 경피 독성 : 자료 없음

다. 급성 흡입 독성 : 자료 없음

라. 아 급성 독성 : 자료 없음

마. 만 성 독 성 : 자료 없음

바. 변이 원성 영향 : 자료 없음

사.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 없음

아. 발 암 성 영향 : 자료 없음

자. 기타 특이 사항 :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 및 생태독성 : 자료 없음.

나. 토양 이동성 : 자료 없음.

다.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 없음.

라. 동 생물의 생체내 축적가능성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제 25 조에 의해 관리

나. 폐기방법

-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제 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 활용 하는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또는해양 오염 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시 주의사항

- 법에 따라 인가된 폐유 재생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 의뢰하여야 하며 절대로 임의 폐기하여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선박 및 항공 운송법에 미 규정(IMDG 코드에 해당사항 없음)

나. 운송시 주의사항

- 해당 관련법에 따라 운송하여야 함.
- 취급시 제 7항을 참조할 것.
- 누출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사항은 제 6항을 참조할 것.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IATA법규에 해당되지 않음. (IATA-DGR : 항공운송)

1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 부처의 화학물질관리관련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4363호) : 폐기물 의 배출 및 처리
-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화학물질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 없음.

-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주) 라우화학

나. 참 고 문 헌 :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자료, 화학백과사전, 기존화학물질목록